마이데이터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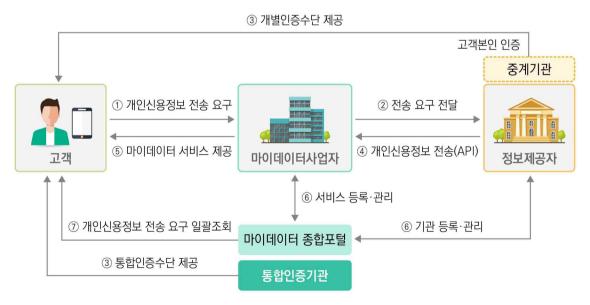
본 장은 마이데이터사업자가 API방식을 이용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고객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준비사항, 세부절차 등을 설명한다.

3.1. 마이데이터서비스 개요 및 참여자 역할

○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를 통해 정보제공자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API방식으로('21년 8월 이후) 수집하고,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저장· 분석하여 고객에게 마이데이터서비스(통합조회 등)를 제공하게 된다.

가. 마이데이터서비스 주요절차

〈마이데이터서비스 구성 및 절차 〉



- (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) ① 고객은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여. ②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API규격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한다.
- (개인신용정보 전송) ③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자는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고. ④ API규격에 따라 마이데이터사업자에 개인신용 정보를 전송한다.
- (마이데이터서비스 제공) 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하나 이상의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집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토대로 통합조회 등 마이데이터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하다.
- (종합포털 등 지원업무) ⑥ 종합포털은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사업자간의 신뢰관계 형성을 지원하고. ⑦ 고객에게 전송요구 이력 일괄 조회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.
 - ※ ⑥~⑦의 종합포털 등의 지원업무는 ①~⑤의 마이데이터서비스 절차 순서와는 무관하다.

나. 마이데이터서비스 주요 참여자 및 역할

○ (참여자) 마이데이터서비스는 고객·정보제공자·중계기관·마이데이터사업자·마이 데이터 종합포털・인증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요건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〈마이데이터 참여자 요건 및 주요 역할 〉

참여자	요건	역할	
고객	하나 이상의 정보제공자에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자	•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• 마이데이터서비스 이용	
정보제공자	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등	• 개인신용정보 제공(전송) • 개별인증수단 발급·관리 • 고객 본인인증	
중계기관	신용정보법령 상 중계기관	• 개인신용정보 전송중계 • 고객 본인인증	
마이데이터 사업자	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	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전달개인신용정보 수신마이데이터서비스 제공 등	
마이데이터 종합포털	신용정보법 상 마이데이터 지원기관	 서비스 등록·관리 자격증명 발급·관리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내용 일괄조회 기능지원 실환경 테스트 등 	
통합인증기관	Cl활용이 가능한 인증수단 제공기관 (본인확인기관,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)	• 통합인증 수단 발급·관리	

- (고객) 고객은 하나 이상의 정보제공자에 본인의 개인사용정보를 보유한 자로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・관리하는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 하기를 희망하는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관련법령

- 신용정보법 제33조의2(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)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· 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 - 1.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
 - 2.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
 -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・이용자
 - 4. 개인신용평가회사
 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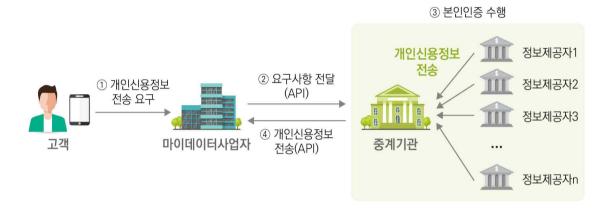
- **(정보제공자)**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에 응하여, 전송요구 주체가 고객 본인임이 확인되면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 하여야 한다

酮 관련법령

- 신용정보법 제33조의2(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)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 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・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.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・중단할 수 있다.
- **(마이데이터사업자)** 고객이 정보제공자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제공자로부터 전송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통합조회 등의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한다.
- **(마이데이터 종합포털)**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사업자를 등록·관리하고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내역 일괄조회 등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위한 지원기능을 제공하다.
- (인증기관) 통합인증을 위한 본인인증수단을 발급하고 발급된 인증수단을 관리 하다.
 -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수단(통합인증)을 고객에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자가 개별적으로 마련한 별도의 인증수단(개별 인증)은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다.
- ※ 본인인증에 대한 상세 설명은 4장. 마이데이터 본인인증 참조

- (중계기관) 중소형 금융회사 등(세부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고시 참고)과 같은 일부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에 따라 마이데이터사업자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.

〈 중계기관을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절차 〉



(참고) 마이데이터 중계기관

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
- 사단법인 금융결제원
- 상호저축은행중앙회, 새마을금고중앙회,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
- 중앙기록관리기관
- 행정안전부, 코스콤
-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
- ※ 중계기관과 정보제공자 간 전송규격, 절차 등은 중계기관이 정한 별도의 규격과 절차를 따른다.

回回 관련법령

- 신용정보법 제22조의9(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)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제공·이용자등의 규모.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 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.
-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8조의6(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) ® 법 제22조의9제5항 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의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 규모. 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수, 시장 점유율, 외부 전산시스템 이용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신용정보법감독규정 제23조의3(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) ③ 영 제18조의6제8항 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"이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영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은행. 같은 조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(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),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보험회사,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(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)인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직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
 - 나. 직전년도 말 기준 해당 업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총 수에서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비율(이하 "시장점유율"이라 한다)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1) 시장점유율이 자기보다 높은 자의 시장점유율과 자기의 시장점유율을 합하여 100분의 90 이하인 경우 2) 해당 회사 단독으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
 - 다.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
 - 2.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제37조의6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"전기통신이용자" 수가 직전연도 말 기준 해당 업권 전체 전기통신이용자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
 - 3.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신용조사회사는 제외한다.
 - 4. 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「상법」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에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.

다. 마이데이터서비스 주요 제공 기능 및 참여자 역할

○ 마이데이터서비스 주요 제공기능은 아래와 같으며 각 참여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
〈마이데이터서비스 참여자 별 주요 역할 〉

역할	마이데이터사업자	정보제공자	마이데이터 종합포털
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사항 전달	0		
개인신용정보 전송	0	0	
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관리	0		
허가요건 준수	0		
보안 고려사항 준수	0	0	
보안수준 진단(상시평가)	0	0	
기능 적합성 심사 및 서비스 취약점 점검	0		
API 시스템 개발·관리	0	0	0
접근토큰·리프레시토큰 발급 관리		0	
접근토큰·리프레시토큰 중복발급 확인	0		
마이데이터서비스 제공	0		
기관간 상호인증	0	0	0
고객 본인인증		0	
요구 내역 일괄 조회			0
참여기관 등록·관리			0
자격증명 발급·관리			0
개인신용정보 송수신 내역 기록·보관	0	0	
개인신용정보 수신 내역 통지	0		